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생존권, 사회·경제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2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생존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량 문제에서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특히 국가의 과도한 수취로 인한 농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2021)에 언급된 증언에 따르면 국가의 과도한 수취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은 텃밭, 땀밭, 소 토지 등에서 별도로 농사를 짓는 등 개인 농사를 통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도 하고 일부 농산물을 팔아 생필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별적인 식량 배급으로 인해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 문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북한인권백서에 언급된 증언 중 어머니가 의사였지만 식량 배급이 없어서 몰래 주사를 놔주며 돈을 벌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북한의 식량 배급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에 차등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급량도 실질적인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권리의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서 인민들이 평등한 교육과 의료혜택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다른 인권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경제력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계층에 따라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언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백서(2021)에 따르면 2018년 4월 딸의 맹장 수술을 위해 200위안을 지불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병원에서 쓰는 거즈나 의료장갑 등을 환자가 직접 사서 바쳐야 했고, 난방을 위한 땀감도 스스로 마련하여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어떤 병인지를 가르쳐 주는 정도만 무상일 뿐, 실제 진료를 위해서는 약값부터 입원비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실정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직업 선택에 있어 자유로운 권리가 있음을 세계인권선언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 고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을 직장배정에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직업 선택에서 개인의 의

사나 능력이 아닌, 인맥, 뇌물공여 여부(경제력)에 따라 직장배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에 따르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뇌물과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경제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직업 선택에서의 권리가 북한에서 실제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전체주의적, 수령절대주의라는 북한의 정치적 체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정권의 강력한 사상 통제 속에 생활하게 되는 주민들은 언론, 사상, 종교, 집회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들을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일색화'를 강조하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백서(2021)에 따르면 여전히 정치 사상적 이유, 미신행위 등을 죄목으로 공개 처형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수집되었다. 2015년 대동강 자라공장 지배인과 당비서가 정치 사상적인 죄목으로 공개 총살되었는데, 반 당적 행위, 수령의 유훈교시 말살, 부정부패 등의 처형 사유가 공표되었으며 1,000명 정도가 참관하여 집행되었다고 증언됐다. 또한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도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아울러 모든 인간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하며, 이는 개인의 생활뿐만이 아닌 개인의 정보와 공간 또한 제삼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북한 주민 감시제도, 불법 가택수사, 통신 간섭 등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백서 언급된 한 증언에 의하면 양 강도 보천군에서 중국과 밀수를 하며 사는데 보위부로부터 항상 감시를 받았으며, 식사 시간에 무엇을 먹는지, 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지 등까지 감시를 당했으며, 심지어 밀수하는 사람들에게 감시자를 붙여 상호 감시하게 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문제가 따로 독립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과 북한이라는 거대한 체제하에 모두 맞물려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년간 대북 정책의 역사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평화적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통일 정책, 그 중 하나인 대북정책의 추구에 있어 절대 도외시될 수 없다. 또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전반에서 평화의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기에, 북한 문제에 대한 타국의 협력을 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 진보와 보수의 갈등, 분열되는 여론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역사를 고려해 볼 때,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진보정부로 간주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김대중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을,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펼쳐 대북포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공유하였다.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및 포용정책을 기조로 했으며 2000년 6월 13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도 이 때 개최되었다.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진행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민감한 주제로 인식하였고, 명시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단지 식량난에 대한 기금 지원,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소극적인 인권정책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해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다만 김대중 정부의 초기와는 달리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고수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5년 핵 보유 주장, 2006년 1차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맞았으나, 북미 접촉을 거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은 김대중 정부 때와 동일하게 북한 주민의 사회권 확보에 집중되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남북관계에 종속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이다.

다음으로 보수정부로 간주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려 한다. 양 정부는 대북압박정책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명박정부는 한국의 온건 대북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점차 배타적인 대북정책으로 나아갔다. 초기에는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였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였고, 정책은 강경해졌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관에 따라 해결하려 했다. 특히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이 때의 인권정책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추진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다수의 무력충돌로 붕괴된 남북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다만 박근혜 정부 역시 남북관계에 종속된 인권 정책을 펼쳤으며,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 역시 역대 최하 수준이었던 점은 아쉬우나, 이 시기의 핵심적인 특징은 재외 탈북민에 대한 보호 제도를 구축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제까지의 인권 정책은 각 정부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책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지적 역시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의 대북 인권정책은 어떤 목표와 기조 하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개입가능성에 대한 분석

북한 인권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방안 중 인도적 개입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독재적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인도적 개입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군사적 개입, 정치적 개입, 경제적 개입, 사회문화적 개입, 제도적 개입이다.

첫째, ‘군사적 개입’은 개입대상국의 정치 세력과 무장 세력에 대해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둘째, ‘정치적 개입’은 설득, 강압 혹은 신뢰구축 등을 통해 개입대상국 정치세력의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이 정치적 개입의 접근 사례이다. 셋째, ‘경제적 개입’은 경제를 매개로 한 억지와 보상이다. 경제적 개입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성과 직결되므로 다른 개입 유형보다 위력이 있고, 국제법상 실효가 있는 접근이다. 넷째, ‘사회문화적 개입’은 개입대상국이 갖고 있는 민족 감정과 정서,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 갈등을 비롯하여 권위주의적 고립성을 완화하거나 붕괴시키거나, 개방적 사고 주입을 통해 국가 혹은 국민 의지 강제하는 것이다. 이 개입 유형은 다른 개입 유형에 대해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섯째, ‘제도적 개입’은 개입대상국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인된 인권 기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틀 내에서 국제법적으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인된 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는 것이다. 총 5가지의 개입 유형에 대해 국제법의 허용, 강제성, 접근성, 적용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경제적 개입과 제도적 개입이 가장 유용하다.

한국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 측에 합법적인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불어 인도적 지원이 고통을 받고 있는 주체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 ‘승자연합’에게 돌아가 오히려 독재 체제의 기반을 강화시킬 위험도 있다. 북한은 정부의 부패도가 높고, 대부분의 국가 자원이 독재자와 그의 지지 세력에 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호 유대관계와 인도주의에 기초한 지원은 북한에게 모든 인민을 고려해야 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무조건적인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북에 대한 강한 억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경우, 타국으로부터 정치·경제적인 억제가 가해진다면 일차적으로 북한은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독재자는 가용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민들을 더욱 맹렬히 착취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억제 정책은 지배 계층보다, 피해를 입어 왔던 인민들의 상처를 더욱 헤집어 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 정책 기초를 채택해야 할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제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은 ICCPR 규정에 따라 유엔 회원국으로서 생명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조약기구의 해석은 구속력이 없지만 '개인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의 국제법적 물결을 활용한다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당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재난국가가 국제적인 구호 노력을 허용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자연재해상황에서의 국제적 구호원칙'과 브뤼헤 결의이다. 브뤼헤 결의는 재난국에 '선의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국제법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 없고, 인도적 지원을 받을 경우 그것이 소수 수뇌부 계층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다.